

(기존건물용, 명의변경용)

(앞면)

열 수 급 계 약 서					
제 호					
사용자	건물명				
	건물소재지				
	소유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사용자 (관리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사용자번호			계약종별		
공급열매체	<input type="checkbox"/> 온수		열사용용도	<input type="checkbox"/> 난방·급탕용, <input type="checkbox"/> 냉방용	
기계실수			열공급개시예정일		
계약용량 연결열부하	(하계:)		계약기간		
검침일			요금납부일		
재산한계점					
주요 계약 내용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이 계약 체결이후 열공급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3. 사용자는 관리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사업자에게 열사용과 관련된 종전 사용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데 동의합니다. 5. 열공급규정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공급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시공,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6.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및 열공급규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부담금과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요금, 이자, 연체료, 위약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7.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과 열공급규정 제44조 제3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최초의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한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8. 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주 요 계 약 내 용	<p>9.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지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에게 대한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p> <p>10.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요금, 공사비부담금, 기타 이 열공급규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여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p> <p>11. 사용자는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사업자 소유의 계량기(원격검침설비를 포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p> <p>12. 사용자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열수송관 건설공사(사용자간 연결공사를 포함합니다),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토지와 공간의 점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p> <p>13. 기본요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추가납부의무는 다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건축물의 처분과 함께 이전됩니다.</p> <p>14. 사용자는 ①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수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②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공급이 정지된 경우, ③열공급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중지.사용제한이 있는 경우, ④사업자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로 인하여 열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⑤행정기관의 지시.인허가 문제.민원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어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⑥사업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p> <p>15. 열수급계약 체결 이후에 사용자가 정부의 허가(공고지역,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사업자와의 협의(공고지역 외 지역, 열공급규정 제14조제5항제5호)없이 타 열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16. 사업자는 열공급규정 제64조에 의거 보증금 예치사유가 있는 사용자에게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 또는 거부 할 경우 규정 제23조에 의거 열공급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p> <p>17.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열공급규정 제10조 제5항에 의거하여 1년 기한으로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p>
<p>사용자 본인은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에 동의하며, 주요 계약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p>	
<p>년 월 일</p>	
<p>사용자 : 소유자 ○ ○ ○</p>	<p>(인)</p>
<p>사용자 : 사용자(관리인) ○ ○ ○</p>	<p>(인)</p>
<p>사업자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p>	<p>(인)</p>